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안내

① 지역별 등록기관(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기관) 2019. 05. 01. 기준

지역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서울	중구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신촌), 누기한의원,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이대의대부속목동병원, 더불어내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희망도레미, 각당복지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멋진인생웰다잉,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한국메멘토모리협회
부산	사상구, 동구	허브휴병원, 정선의료재단온중합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삼육부산병원	생애말기돌봄연구소, 그린닥터스
대구	-	대구의료원	리더스웰다잉협회
인천	부평구	인천광역시의료원, 나은병원	대한호스피스웰다잉협회
대전·세종	-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웰다잉연구소
광주	동구	KS병원, 전남대학교병원	-
울산	-	-	불교호스피스협회
경기	부천, 고양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세계로요양병원, 아가페의료재단시티병원, 일심의료재단 우리병원, 안양생병원, 지생병원, 느티나무의원, 로아신경과의원, 힐링웰요양병원, 국립암센터병원,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사)하이패밀리, (사)호스피스코리아
강원	-	강원도원주의료원, 효재요양병원, 한림대학교부속춘천성심병원,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아리웰다잉연구회, 기쁨가득사회적협동조합
충남·북	천안(2), 보령, 서천, 금산, 예산, 부여	인화재단한국병원,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대한웰다잉협회,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
전남·북	고창, 김제, 부안, 완주, 전주, 정읍, 무주, 익산, 남원, 광양, 순천, 나주	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진안군의료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의)백상의료재단가족사랑요양병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전남제일요양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사)위드피플, (사)원불교호스피스, 웰다잉전북연구원,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지부
경남·북	문경, 울진	보리수연세안심프로로의원, 한성재단포항세명기독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예손요양병원, 성심메디컬의원	-
제주	-	제주대학교병원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지사, 출장소) 197개

③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홈페이지 www.LST.go.kr ● 문의전화 1855-0075

연명의료 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삶의 마지막,
당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죽음, 준비하고 계시나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톨스토이는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죽음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삶을 정리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큰 불행일 것입니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으면

임종기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의도하는 바대로 죽음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죽음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7

보라매 병원 사건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환자의 퇴원에 대한 의료진 및 가족의 살인죄 및 살인방조죄로 인정한 판례

2009

김할머니 사건

평소 본인의 연명치료거부 의사에 근거한 가족의 요청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판례

201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결정을 법제도화 하기 위한 권고안 마련

2016.2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2018.2.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019년 현재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전국 300여개소 지정 운영 중

Q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제도입니다. (2018.02.04 시행)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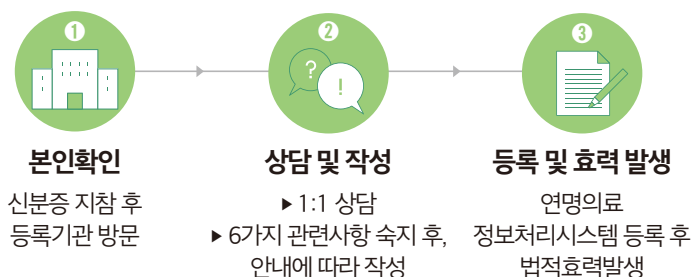
-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 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300여개 등록기관을 통하여 1:1 상담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①심폐소생술 ②혈액투석 ③항암제투여 ④인공호흡기 착용 ⑤체외생명유지술(ECLS), ⑥수혈, ⑦혈압상승제 투여 및 그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4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상실

-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 (향후) 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 상담자가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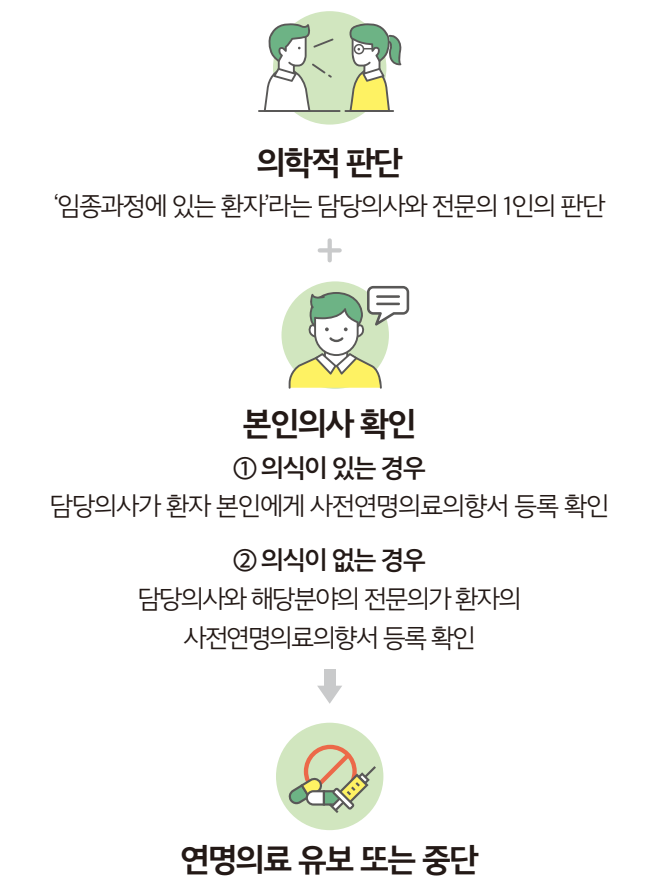
작성 전 알아야 할 6가지

<p>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대한 사항</p>	<p>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p>	<p>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p>
<p>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p>	<p>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p>	<p>등록기관의 폐업·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p>

-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및 철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등록기관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본인조회**: 작성 15일 후 가까운 등록기관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족열람**: 환자가 의향서 작성시 가족 열람을 허용한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 필요)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절차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은 향후 본인이 환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①'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②본인 의사확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반 사항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홈페이지 www.LST.go.kr ☎ 문의전화 1855-0075